

-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 산업시설(제조, R&D, 유통)용지 공급 공고

- ✓ 분양신청자는 본 공고문의 모든 내용을 숙지한 후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본 공고문의 내용과 산업단지 조성현황, 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하여 본인이 인지하지 못함을 이유로 우리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매입신청 및 계약체결 전 신청인은 현장답사, 각종 제한사항 확인 등을 통하여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대상 용지

- 소재지 : 광주 북구 오룡·대촌·월출동, 광산구 비아동 / 장성군 남면·진원면 일원
- 공급토지 : 총 76필지(산업시설(제조)용지 67필지, 산업시설(R&D)용지 7필지, 산업시설(유통)용지 2필지)

공 급 용 도	가획지번호	면적(m ²)	공급금액(원)	입주업종 코드번호
산업시설용지 (제 조)	제조1-1	4,937.0	3,599,073,000	C27 (용도 : 의료산업)
	제조1-2	4,934.0	3,596,886,000	
	제조1-3	4,773.0	3,479,517,000	
	제조2-1	3,141.0	2,289,789,000	C23, C26, C27, C28, C29 (용도 : 광기반 융복합)
	제조2-2	3,300.0	2,356,200,000	
	제조2-3	6,592.0	4,805,568,000	
	제조2-4	6,600.0	4,811,400,000	
	제조2-5	6,534.0	4,763,286,000	
	제조3-1	3,300.0	2,356,200,000	
	제조3-2	3,300.0	2,356,200,000	
	제조3-3	3,300.0	2,306,700,000	
	제조3-5	3,300.0	2,306,700,000	
	제조3-6	3,300.0	2,356,200,000	
	제조3-7	3,300.0	2,306,700,000	
	제조3-8	3,300.0	2,356,200,000	
	제조3-9	3,300.0	2,356,200,000	
	제조3-10	3,300.0	2,356,200,000	

공 급 용 도	가획지번호	면적(m ²)	공급금액(원)	입주업종 코드번호
산업시설용지 (제 조)	제조4-1	3,813.0	2,722,482,000	C26, C28 (용도 : 차세대전지) ※중소기업전용용지
	제조4-2	3,813.0	2,665,287,000	
	제조4-3	3,813.0	2,722,482,000	
	제조4-4	3,813.0	2,665,287,000	
	제조4-5	3,813.0	2,722,482,000	
	제조4-6	3,814.0	2,665,986,000	
	제조5-1	6,469.0	4,437,734,000	
	제조5-2	6,469.0	4,521,831,000	
	제조5-3	6,469.0	4,437,734,000	
	제조6-1	4,862.0	3,544,398,000	C27 (용도 : 의료산업) ※중소기업전용용지
	제조6-2	4,992.0	3,639,168,000	
	제조6-3	5,040.0	3,674,160,000	
	제조6-4	5,040.0	3,674,160,000	
	제조6-5	5,038.0	3,632,398,000	
	제조7-1	5,150.0	3,754,350,000	C27 (용도 : 의료산업)
	제조7-2	5,317.0	3,796,338,000	
	제조7-3	5,317.0	3,876,093,000	
	제조7-4	5,316.0	3,715,884,000	
	제조8-1	5,353.0	3,822,042,000	
	제조8-2	5,354.0	3,742,446,000	
	제조8-3	3,520.0	2,513,280,000	
	제조8-4	3,520.0	2,513,280,000	
	제조8-5	3,520.0	2,513,280,000	
	제조9-1	4,498.0	3,211,572,000	C26, C28 (용도 : 차세대전지) ※중소기업전용용지
	제조9-2	4,498.0	3,085,628,000	
	제조9-3	4,498.0	3,211,572,000	
	제조9-4	4,498.0	3,211,572,000	
	제조9-5	4,498.0	3,211,572,000	
	제조9-6	4,498.0	3,211,572,000	
	제조9-7	4,332.0	3,158,028,000	

공 급 용 도	가획지번호	면적(m ²)	공급금액(원)	입주업종 코드번호
산업시설용지 (제 조)	제조10-1	11,876.0	8,479,464,000	C26, C28 (용도 : 에너지산업, 나노산업)
	제조10-2	11,876.0	8,396,332,000	
	제조10-3	11,876.0	8,479,464,000	
	제조10-4	11,876.0	8,657,604,000	
	제조10-5	8,408.0	6,062,168,000	
	제조10-6	3,300.0	2,379,300,000	
	제조11-1	10,971.0	7,756,497,000	C26, C28 (용도 : 에너지사업, 나노산업) ※중소기업전용용지
	제조12-1	4,820.0	3,441,480,000	
	제조12-2	5,365.0	3,830,610,000	
	제조12-3	5,395.0	3,852,030,000	
	제조12-4	6,341.0	4,483,087,000	
	제조12-5	7,619.0	5,386,633,000	
	제조12-6	5,733.0	4,053,231,000	C26, C28 (용도 : 스마트 케어가전)
	제조12-7	5,097.0	3,715,713,000	
	제조13-2	7,155.0	5,215,995,000	
	제조13-3	6,722.0	4,900,338,000	
	제조13-4	6,661.0	4,855,869,000	
	제조13-6	6,459.0	4,708,611,000	
	제조13-7	6,463.0	4,711,527,000	
	제조13-8	6,717.0	4,896,693,000	
산업시설용지 (R & D)	연구2-1*	47,246.0	36,615,650,000	J58, J59, J62, J63, M70, M72, M73 (산업육성구역)
	연구6-2	3,523.0	2,568,267,000	
	연구6-3	3,524.0	2,568,996,000	
	연구15-1	3,447.0	2,540,439,000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연구15-2	3,436.0	2,477,356,000	
	연구15-3	3,255.0	2,444,505,000	
	연구15-4	3,420.0	2,568,420,000	
산업시설용지 (유통)	유통2-1	19,352.0	14,533,352,000	H49 ~ H52
	유통2-2	16,380.0	12,301,380,000	

* 연구2-1의 경우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실시계획(광주광역시 고시 제2024-249호, 전라남도 고시 제2024-487호) 상의 산업단지 유치업종 계획에 따른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100대 국정과제) 사업을 운영하는 자만 분양·입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홈페이지(www.gmcc.co.kr) > 공사소식 > 분양공고 > 공급 공고의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고 이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제한 업종

○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관리계획에 따른 입주대상 업종

제조 2, 3 (광기반응복합)	• 비금속광물(C23)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C26)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C27) • 전기장비(C28) • 기타기계 및 장비(C29)
제조 13 (스마트케어가전)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C26) • 전기장비(C28)
제조 4, 5, 9 (차세대전지)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C26) • 전기장비(C28)
제조 1, 6, 7, 8 (의료산업)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C27)
제조 10, 11, 12 (에너지산업, 나노산업)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C26) • 전기장비(C28)
연구	• 출판업(J58),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J59),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 정보서비스업(J63), 연구개발업(M70), 건축 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M72),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73)
유통	• 운수 및 창고업(H49~H52)

※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내 산업시설용지(R&D) 연구15-1~4의 경우 입주대상업종 코드 제한은 없으나, 해당 필지에 대해서는 분양·입주 신청 전 반드시 관리기관인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 이전 기준 입주대상 업종 자격조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업종별 코드번호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번호로 산업분류번호는 통계청 인터넷 홈페이지(www.kostat.go.kr) → 통계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 → 해당업종 검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제한 업종

- ▶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관리계획에 따른 입주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
- ▶ 입주대상 업종이라 하여도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환경유해 업종은 제외함
 - 비금속광물(23) : [233], [239](23995 탄소섬유제조업 제외)
 - 전자부품(26) : [26211], [26212], [26219], [26221], [26222], [26223]
 - 전기장비(28) : [28902], [28909]
 - 기타기계 및 장비(29) : [29111]

3. 입주자격

- (산업시설용지 내 산업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변경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37호)에서 정하는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 및 환경관리기준을 충족하는 자
-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본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의 입주가능 여부 확인이 가능한 자에 한함
- 중소기업전용용지(제조4,5,6,9,11,12)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에 따른 개발제한 지역 내 중소기업에 한함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일부 발췌)

(5)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단지(용지 또는 입주공간)의 확보

① 해제대상지역 안에 산업단지, 물류단지 및 도시지원시설용지 등을 조성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지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분양 및 임대가능한 입주공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지하층은 제외한다) 연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을 개발제한구역 안 (중양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이 인정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주변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에 위치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자를 포함하고 2016년 3월 30일 이전에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위한 전용단지(용지 또는 입주공간)로 공급해야 한다.

4. 입주대상자 결정방법 및 입주 우선순위

○ 입주대상자 결정방법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입주 심사기준에 의하여 입주대상자를 선정한 후 경합 시 추천을 통해 입주대상자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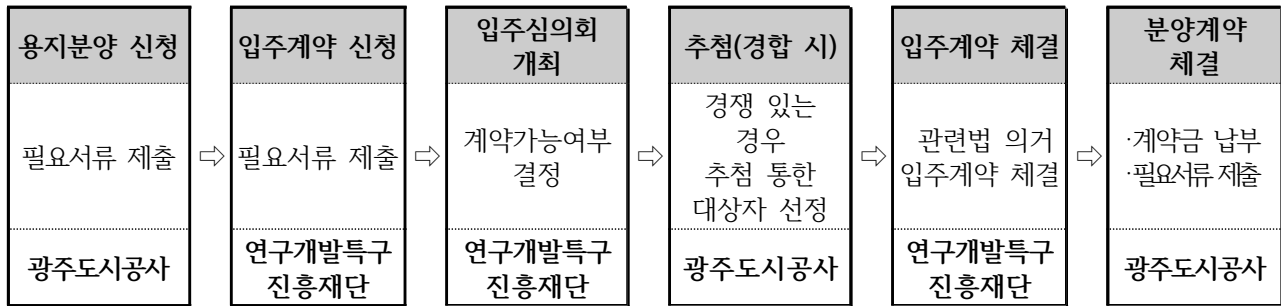
※ 선정결과는 유선 또는 서면으로 개별 통보합니다.

○ 입주 우선순위

- (1) 재정능력이 확실하고 지역경제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기업
- (2) 수도권 및 타 지역으로부터 본사 및 공장 이전(확장) 기업
- (3)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 및 협동화사업으로(신청일 현재) 창업승인 된 기업
- (4) 「국토계획법」상 주거, 상업, 녹지지역에서 이전코자 하는 기업
- (5)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

※ 입주 우선순위 해당업체는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분양절차



○ 공급신청 방법

- ▶ 용지분양 신청 : 직접 방문 접수(인터넷, 우편 접수 불가)
- ▶ 입주계약 신청 : 이메일 신청접수(제출처 : gj@innopolis.or.kr, ☎062-603-5012)
- ※ 이메일 신청접수 후 관리기관에 반드시 확인 전화를 하셔야 합니다. 신청접수 확인 없이 신청 누락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건에 대해 광주도시공사 및 관리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분양신청과 입주신청은 별도의 건으로 해당 기관에 모두 신청하셔야 합니다. 분양 및 입주계약 신청 중 하나의 절차를 누락 하였을 경우 해당 신청 건은 무효 처리됨을 안내드립니다.

6. 공급일정 및 장소

구 분	기 간	장 소	비 고
공 급 공 고	2025.5.21.(수) ~ 2025.6.5.(목)	광주도시공사 홈페이지	www.gmcc.co.kr
분 양 신 청 (서 류 접 수)	2025.6.9.(월) ~ 2025.6.10.(화)	광주도시공사 분양상담실(1층)	방문 신청접수
입 주 신 청 (서 류 접 수)	2025.6.10.(화) ~ 2025.6.11.(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메일 접수	gj@innopolis.or.kr
입 주 심 사	2025.6.12.(목) ~ 2025.6.20.(금) 이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입주심의회 개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	2025.6.23.(월)	광주도시공사 분양보상팀(14층)	대상자 선정
입 주 계 약 체 결	2025.6.23.(월) ~ 2025.6.27.(금)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온라인 민원 접수	ims.innopolis.or.kr
분 양 계 약 체 결	2025.6.30.(월)	광주도시공사 분양상담실(1층)	방문 계약

※ 입주 관련 사항은 관리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입주계약 신청 및 계약체결 시간은 10:00~17:00까지입니다.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7.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담당기관					
용지분양 신청시	■ 용지분양신청서, 종람확인서 및 용지매입신청 유의사항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명서(공고일 이전 등록기업에 한함)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대표자 신분증(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및 사용인감) ■ 【개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신분증	광주 도시공사					
입주계약 신청 시 (①, ② 모두 제출)	[①_공통 제출사항] ■ 입주계약신청서 1부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개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용지분양신청 접수증 1부	연구개발 특구진흥 재단					
	[②_구역별 제출사항] <table><tr><td>산업시설구역</td><td>■ 사업계획서 1부</td></tr><tr><td rowspan="2">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td><td>■ 사업계획서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방법 1부</td></tr><tr><td>■ 입주계약 요건에 해당함을 증빙 하는 서류 1부</td></tr></table>		산업시설구역	■ 사업계획서 1부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 사업계획서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방법 1부	■ 입주계약 요건에 해당함을 증빙 하는 서류 1부
	산업시설구역		■ 사업계획서 1부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 사업계획서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방법 1부						
	■ 입주계약 요건에 해당함을 증빙 하는 서류 1부						
용지매매 계약체결시	■ 계약금 납입영수증(공급금액의 10%) ■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 법인 : 법인인감(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및 사용인감), 대표자 신분증 ■ 개인 : 인감도장, 신분증						
대리인 추가서류	■ 위임장(명확한 위임범위 기재) ■ 위임용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 입주(분양)선정된 기업체는 관리기관 및 광주도시공사와 정해진 기간 내에 입주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입주(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주(분양)업체 선정이 취소됩니다.

※ 분양·입주신청 및 입주심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 구비서류의 정정·보완 및 별도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중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하는 서류는 분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원본이어야 합니다.

8. 대금 납부 방법

각종 이자율은 우리 공사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요율에 따라 각각 일할계산하여 산정합니다. 이자산정은 평년과 윤년의 구분 없이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 납부 방법

구 분	납 부 시 기	납부할 금액	비고
계 약 금	계약체결 시	총 분양가격의 10%	'25.6.
중도금 1차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총 분양가격의 22.5%	'25.12.
중도금 2차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총 분양가격의 22.5%	'26.6.
중도금 3차	계약체결일로부터 18개월 이내	총 분양가격의 22.5%	'26.12.
잔 금	2027년 3월 31일	총 분양가격의 22.5%	'27.3.

※ 비고란의 날짜는 매수인의 이해를 돕고자 알려드리기 위함이며, 계약체결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필지별 납부할 금액은 필지별 계약서 약정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약정대금 납부는 별도의 고지를 생략**하오니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약정일자에 맞추어 아래 납부 계좌로 입금(반드시 계약자 명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명의로 계약체결 할 경우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대하여는 매수인은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 상기 분양대금 납부방법은 실제 계약체결일과 소유권이전 가능시기(사업준공) 변동 발생 및 국가 지자체가 매수인일 경우 등에 한하여 납부시기, 납부할 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납부계좌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광주은행	055-127-000364	광주도시공사

○ 선납할인 : 연 4.0%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로부터 15일 이전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단,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약정일 보다 미리 납부하여 선납할인을 받은 후 그 매매대금의 납부약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토지사용승낙을 받거나 면적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면적정산기준일로부터 당초 납부약정일까지의 선납할인액은 우리 공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선납할인금 = 할인대상금액 × 선납할인율 × 할인대상일수/365일

○ 지연손해금 : 연 7.5%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약정일 익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미납금액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① 지연손해금 = 지연원금 × 지연손해금률 × 지연일수/365일

② 수납대금 변제충당 순서는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에 의함.

※ 금회 공급토지는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초 통보한 면적정산일 또는 토지사용가능시기가 늦춰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할부이자 및 선납할인 기산일 변경 등 수납방법이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토지사용, 면적정산, 가격정산, 소유권이전

- ① 사업준공 전 토지사용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로서 현재 조성상태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우리 공사의 토지사용승낙을 얻어 가능합니다.
 ※ 토지사용가능시기는 문화재 시굴·발굴조사, 지구 내 예측 불가능한 매립폐기물 또는 조성공사 진행상황, 기반시설 설치 현황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조성공사 및 사업준공 일정이 변경(연장)될 경우 토지사용 및 소유권 이전등기 시기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의 사용이나 기반시설의 이용이 부분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② 공급면적은 조성사업 준공 전 가분할된 면적이므로 사업준공 후 확정측량 결과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의 당해 필지별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하고, 정산금에 대한 이자는 상호 부리하지 않기로 합니다.
 ※ 면적정산에 따른 공급면적이 감소한 경우로서 공사로부터 매수인이 환급받을 금액이 있을 시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아 미납잔대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변제충당순서에 따라 미납잔대금에서 차감하여 반환에 갈음합니다.
- ③ 가격정산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함으로 사업준공 후 가격정산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 ④ 소유권이전(2027.03.이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사업준공 이후 지적공부 및 등기정리를 완료한 후에 가능하며, 사업준공일은 인·허가 및 공사 진행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은 이를 인지하고 수용하여야 합니다.
- ⑤ 사업이 준공되어 지적(등기)공부 정리가 완료된 이후에는 우리 공사는 별도로 토지사용승낙을 하지 않으며, 매수인은 매매대금 전액 납부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이후에 토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⑥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및 향후 건축을 위한 측량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⑦ 소유권 이전 이후 토지는 매수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나대지로 방치할 시 주변 공사 현장의 폐자재 등을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장기간 미건축 시 헐스 등을 설치하여 예방하여야 하며, 관련 피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⑧ 매수인은 소유권이전 이후 당해 토지로부터 선 입주한 연접 토지로 빗물 유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10.

처분제한

- ①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후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공장부지 및 시설 등은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산업집적법」 제3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7항)
- ② 입주기관(기업)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연구12,13,14,15,16,17,18,20)의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신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부지에 대한 양도가격은 부지의 취득가격과 부지의 취득 가격에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 ③ 분양받은 산업시설용지를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법」 제4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3조)
- ④ 공장설립등의 승인(입주계약 체결)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건물 착공을 하여야 함. 다만,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산업단지가 조성 중인 경우에는 토지 사용허가 및 건물 착공 가능 시점부터 3년 이내에 해야합니다. (「산업집적법」 제13조의5)
- ⑤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경우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준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은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산업시설구역의 경우 공장 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업한 경우 등은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법」 제42조)
- ⑥ 소유권이전 전에도 명의변경은 불가합니다.
- ⑦ 본 준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 사항은 「연구개발특구법」, 「산업집적법」 및 관리기관의 입주계약 규정 등에 따라야 합니다.
- ⑧ 처분제한 관련 사항은 관리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중도금 대출, 주요세금 및 신고사항**

- ① 토지분양대금 지원 등을 위하여 중도금 대출협약 체결한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 관련 추천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조건 등은 각 은행별 여신규정 및 신청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매수인은 먼저 대출협약 은행과 개별적으로 사전 협의하신 후 대출추천서를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총 분양대금의 10% 이상을 납입한 자에 한해 신청 가능) 또한 우리 공사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더라도 해당 은행 자체의 여신규정 또는 신용등급 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② 약정대금 납부는 별도의 고지를 생략하오니, 매매계약서상의 납기일에 맞추어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토지분 재산세 납부 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로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매매대금 완납 또는 토지사용승낙을 받았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최종 약정일이 도래한 경우는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이 경우 납부방법은 매매대금이 완납 또는 소유권이 이전된 때에는 매수인에게 직접 부과되고, 매매대금 완납 전에는 토지사용승낙 또는 최종 약정일 경과 시는 매도자인 공사가 먼저 납부하고 이를 매수인으로부터 공사가 수납하게 됩니다.
- ※ **주요세금 안내는 매수인 편의를 위하여 공사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함이며, 세법 관련 법령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매수인이 관계법령 확인 및 과세기관 문의 등을 통하여 반드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④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므로, 계약체결 시 우리공사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① 본 산업단지는 용지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며, 추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 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지구단위계획 등 인·허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필지의 면적이나 형상, 토지이용계획(세대수, 용적률, 면적, 최고층수 등), 주변 토지의 용도 및 형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② 향후 관련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건축행위 및 사용에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개별 건축물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의한 제 대책수립이 필요한 경우 매수인의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③ 건축 시 해당 지구의 각종 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변경 포함), 에너지 사용계획,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다를 경우 이들 중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에 따라야 합니다.
- ④ 매수인은 매입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도로와의 단차, 암반 유무, 법면 상태, 옹벽 여부, 공사계획, 구조물 현황, 기반시설 설치 등), 사업지구 내외 입지여건을 현장답사와 관련도면 및 첨부문서 등을 통해 확인한 후 이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으며, 위의 내용으로 우리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특히, 해당 필지는 바다짐 구간으로 매수인은 지반조사 등을 통해 연약지반 유무 등 지반의 상태를 확인하고 지지력 확보방안을 반영하여 건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중 및 이용 시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을 고려하여 건축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비용 및 대책을 우리 공사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또한, 완충녹지 및 근린공원은 실시설계 진행 중임에 따라 [붙임] 인근공원 및 녹지 검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내용은 추후 관계기관 협의결과 및 사업추진 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⑤ 매수인은 현장답사 및 관련도면 열람을 통해 해당필지 주변 환경 및 공공시설물 등의 상태를 인지하여야 합니다. 공공시설물(가로수, 가로등, 소화전, 표지판 등)은 최적의 위치에 설치한 공익시설임을 감안하여 건축행위 시 지장을 이유로 시설물 이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매수인은 사업지구 내 기반시설이 미비할 경우 토지사용시기가 다소 순연될 수 있음을 받아들여야 하며, 사업준공 전 토지를 사용할 때에는 단지 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기반시설 사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지구 관련 오수처리를 위한 오·폐수처리장 등 기반 시설 설치 추진 과정에서 대·내외 여건에 따라 해당용지 입주로 인한 오수 발생량에 대한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며, 전력·통신·가스·상수 등 간선시설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직접 각 시설 설치기관과 인입방법, 비용부담 등을 별도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 ⑦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매수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후 설계 및 건축공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우리 공사에서 제공한 시공측량에 따른 부지 경계는 참고용 자료로만 활용될 수 있으며, 설계 및 시공오류로 인한 인접부지 침범 시 매수인의 책임하에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⑧ 매수인은 건축 등 토지사용 시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 기반시설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건축공사 등을 위한 진출입용 임시가설도로(비포장)를 개설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공사와 협의 및 승낙을 받은 후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 ⑨ 매수인은 부지 내 진출입 등을 위해 기반시설물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및 각종 규정에 따른 건축한계선,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등의 사항을 건축 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⑩ 매수인은 건축공사로 인해 필지 주변 하수관 및 필지 내로 분기된 연결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파손 시 즉시 우리 공사와 협의 후 복구하여야 합니다. 단, 우수배제를 위해 단지 내 설치된 집수정 및 우수관로는 건축 시 존치하여 이용하거나 불필요 시 매수인의 부담으로 철거 및 폐쇄하여야 합니다.
- ⑪ 건축공사 시 발생하는 폐기물 및 자재 등을 타 부지로 무단 투기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건축공사 중 지하 매설물 및 토류벽 등을 설치 시 필지 경계 밖으로 침범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⑫ 건축공사 지하 터파기시 인접도로에 매설된 관로의 침하 및 변형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지하 터파기용 가시설 설치가 필요시에는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완료여부에 따라 해당시설물 관리기관(관할 지자체 또는 광주도시공사)과 반드시 협의 후 대상 부지에 접하는 도로구역(지상 및 지중포함), 녹지대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합니다. 흙막이 가시설 공법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 후 시행토록 하고, 어스앵커 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 ⑬ 업체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별도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여야 하며, 별도 배출허용 기준 초과 시 개별 전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 ⑭ 용지매수 이후 토지는 사유재산에 해당하므로 관리의 의무는 매수인에게 있으며, 분양 후 건축하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할 경우 연접 토지 및 도로로 흙탕물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부지경계 출입제한시설 등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 무단점용, 폐기물의 투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매수인의 관리 미흡에 따른 보안을 우리 공사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⑮ 공급토지는 비다짐으로 조성되어 시간경과에 따라 일부 침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지 내 침하를 이유로 매수인은 우리 공사에 추가성토 및 정지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⑯ 매수인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거 공급토지 매입 및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사전 확인·준수하여야 합니다.

※ 특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부담금은 관련 법령에 의거 해당 건축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급토지의 관할 지자체 문의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⑰ 대금납부와 관련하여 별도의 고지는 없으며, 계약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기일에 맞추어 계약자 명의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⑱ 계약체결 이후 주소변동이 있을 시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⑲ 「본 공급공고문 및 공급공고에 첨부된 부속서류」와 「용지매매계약서 및 용지매입신청 유의사항」등에 언급이 없는 내용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⑳ 본 공고내용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신문 공고하지 않고, 공사 홈페이지 분양공고란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
- ㉑ 기타 공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 입주심사관련 :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기획경영실 (관리기관)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10층 www.innopolis.or.kr	☎ 062-603-5012
☞ 용지분양관련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분양보상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14층 www.gmcc.co.kr	☎ 062-600-6661
☞ 지구단위계획 등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개발사업1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14층 www.gmcc.co.kr	☎ 062-600-6741

2025. 5. 21.



광주광역시도시공사사장